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학생 식품 조리·판매(대학 축제 등)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안 내 및 협조 요청

1. 관련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4171(2022.06.02.) 「식품안전관리 협조요청」
- 나.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6879(2022.06.14.) 「대학교 축제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안내 협조 요청」
- 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40(2022.03.07.) 「[중요] 새학기 내 건전한 학생활동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 2.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학교 축제** 등에서 **음식점과 같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식품위생법」위반 여부 질의 및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 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 3. 귀 대학에서는 **대학 내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학생들이 식품위생법을 인지하여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 학생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관련 지도·안내사항 >

-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 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영 업신고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대학 축제와 같이 한시적인 비영리 친목도모 목적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은 아니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행위,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특히, 학교내 축제 행사 목적이 아닌 **학교 주변 주민, 관광객(불특정인) 등에게 학교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학교주변 음식점 영업자 및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시도별 식품위생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대학 소재지가 소속된 해당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도별 식품위생부서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교 육 부 장

교육부 장관인

고등교육기관전체

주무관 **임정화** ^{행정사무관} 나대일 과장 **김태경**

협조자

전화 044-203-6616 전송 044-203-6485 / ljh@moe.go.kr /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